

보도와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

이상희
연대교수·중재위원

언론중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한 언론중재위원회 지방토론회가 제주와 마산에서 지방 언론계·학계·법조계 등 각계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각각 개최되었다.

1985년 5월 17일 제주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제주지방토론회에서는 이상희위원(연세대 교수)의 「보도와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이란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고, 1985년 6월 8일 마산크리스탈호텔에서 열린 마산지방토론회에서는 안광식위원(이대 교수)의 「보도의 문제점과 언론중재」라는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는데, 다음은 그 주제논문들을 초록한 것이다

..... 편집자 주

언론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옳은가에 대한 해답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또 나라마다 다르다. 언론의 당위적 기능은 한 나라의 정치·경제적 이념과 제도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또 한 나라의 역사적 배경과 그 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적 조건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오보의 개념도 언론의 당위적 기능에 따라 달라진다.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명백한 오보로 규정하고 처리할 보도도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오보가 아닌 정당한 보도가 되는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오보란 사실과 다른 보도 즉 잘못된 보도를 뜻한다. 예를 들어 흑을 백이라 한다든가 백을 흑이라 했을 때 이는 분명 오보다.

국민이 꼭 알아야 할 일을 취재하여 보도하는 일을 업으로 삼는 언론도 사람이 모여 이루어진 기구이고 보면 오보란 불가피하다. 더구나 신속한 보도를 저널리즘의 신조로 삼고 있는 자유민주주의국가의 언론은 오보의 위험성을 처음부터 잉태하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따라서 오보를 범한다는 것은 권위있는 언론, 책임있는 언론의 수치임에 틀림없지만 어떤 언론도 오보를 범할 수 있는 개연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것이 다.

오보를 크게 분류하면 과실오보와 무과실오보가 있을 수 있고 또 가해오보와 비가해오보로 구분할 수 있다.

과실오보란 보도자나 보도기관이 주의를 하고 조심을 했으면 범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오보를 뜻하는데 비해 무과실오보는 주의를 하고 조심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생긴 오보를 뜻한다.

이건의 여지가 있어 논란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경우 반대의견자의 주장도 반드시 들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오보가 났다고 한다면 이는 과실오보가 된다. 이에 비해 사건의 진위와 기사의 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보가 났다고 한다면 이는 무과실오보가 된다. 예를 들면 통신으로부터 밖에 기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신문사나 방송사가 통신의 기사를 전재했는데 통신의 기사가 잘못되었다면 신문이나 방송은 무과실오보를 범한 것이 된다.

한편 가해오보와 비가해오보는 오보로 인해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오보를 구분하는 방법이다. 오보로 인해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가해오보가 되고, 오보가 났지만 피해자가 없다면 이는 비가해오보다. 예를 들면 사람을 죽이지 않은 사람을 살인자라 보도했다면 이는 가해오보이고 살인자의 이름이 김길동인데 이길동으로 보도되었다면 이는 비가해오보가 된다.

그리고 오보에는 과실가해오보와 과실비가해오보가 있을 수 있고 또 무과실가해오보와 무과실비가해오보가 있을 수 있다. 과실가해오보란 부주의한 오보로 피해를 입는 사람이 발생한 경우이고 과실비가해오보란 부주의한 오보가 났지만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는 경우이다. 그리고 무과실가해오보는 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보를 범한 것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 및 기관에 피해를 가하는 결과를 남는 경우이고 무과실비가해오보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보를 범했지만 이로 인해 물질적·정신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다.

위에서 논급한 오보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의도적 오보와 비의도적 오보가 있을 수 있다. 의도적 오보란 보도자가 특정인이나 집단 및 기관에 이익 혹은 불이익을 가져다 주기 위해

고의로 범하는 오보를 뜻한다. 예를 들면 이해관계가 얽힌 사건을 다루는 기자가 어느 일방에게 이익을 주는 한편, 다른 일방에게는 불이익을 주기 위해 사건을 고의로 왜곡하여 보도했다고 한다면 이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의도적오보가 된다. 이때 보도자나 보도기관 자체가 이해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이에 비해 비의도적 오보란 어느 일방에게 이익 혹은 불이익을 가져다 줄 고의적 의도없이 범한 오보를 뜻한다. 그러나 비의도적 오보가 결과적으로는 가해오보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의도적 오보도 비가해오보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

오보의 성격으로 보아 가장 악성적인 오보는 의도적 가해오보이고 가장 정상참작의 여지가 많은 오보가 비의도적 무과실비가해오보다.

그러나 비의도적 오보라 해서 모두 무과실오보의 범주에 속하는 것은 아니고 더구나 비가해적오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보를 모두 하나로 보고 이를 그 성격에 따라 구분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해함으로써 이에 대한 올바른 파악을 어렵게 만들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시정책에 대한 논의의 초점을 흐려놓고 있다.

언론이 거대한 권력체로 성장하여 스스로의 이해를 갖게 되면서부터 의도적오보의 건수는 늘어났고 이런 오보로 인해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오보의 성격이 그만큼 악성화되었다는 것이다.

오보를 범했을 때 오보를 한 언론은 그것이 어떤 성질의 것이든 이를 바로 잡아 정정해줄 책임과 의무가 있음은 두말 할 것도 없다. 설사 그 오보가 비의도적이고 무과실의 오보이고 또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생기지 않았다 해도 이를 정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확·공정한 보도는 언론이 지켜야 할 기본강령이기 때문이다.

오보로 인한 피해를 입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도 이를 바로 잡아 줄 의무가 언론에 있지만 이는 저널리즘의 윤리에 의한 의무일 뿐 법적 구속에 의해 정정보도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오보로 인해 피해자가 생기면 비록 그것이 비의도적이고 무과실적인 보도로 인한 오보라도 그 피해자는 정정보도를 청구할 법적권리를 갖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 오보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향유하는 권리가 정정보도청구권이다.

물론 정정보도청구권을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오보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곧바로 법원에 제소함으로써 오보에 대한 응분의 보상을 받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은 나라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정정보도의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오보를 내면 그 내용과 사정은 어떻든 이를 정정함으로써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는 것은 법 이전의 윤리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언론중재제도는 언론기본법 제 6 장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에 의해 이루어졌다. 언론기본법 제 49 조 제 1 항을 보면 「정기간행물과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는 그 공표가 행하여진 후 신문·방송·통신의 경우는 14 일 이내에, 그 밖의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1 월내에 서면으로 발행인이나 편집인 또는 방송국의 장이나 편성책임자에게 정정보도의 게재 또는 방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를 규정한 언론기본법 제 6 장 중 해석상의 혼선을 빚을 수 있는 부분은 제 49 조 제 1 항 「정기간행물과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는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대목이다. 무엇보다 「사실적 주장」이란 말이 애매하다.

만약 「사실적 주장」이란 말을 「사실보도」란 말로 해석한다면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를 규정한 제 49 조 제 1 항은 법적해석상의 혼선을 불러일으킬 소지를 충분히 지닌다. 왜냐하면 사실보도도 언론상해의 요건을 구성하는 요인이 된다면 이는 언론의 기능을 위축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기본법 제 6 장 제 49 조 제 1 항 중의 「사실적 주장」이란 말은 「사실인 것처럼 보도를 했지만 사실이 아닌 일방적 주장 다시 말해 사실이 아닌 보도 즉 오보」를 의미하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

만약 「사실적 주장」을 「사실보도」로 해석한다면 사실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까지도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피해자가 생길 우려가 있는 사건을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언론이 범한 오보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국한시키는 것이 옳다.

그렇다면 사실이나 논평과 같이 주관적 가치평가와 개인적 의견의 개진이 보장된 지면이나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어느 개인이나 단체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그 피해자는 이에 대한 정정보도의 게재 또는 방송을 요구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 의문에 대해서는 두가지의 해답이 가능하다고 본다. 사실·논설·논평 그리고 평론과 같이 개인적 평가와 가치주입이 허용 내지 권장되는 지면이나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논평이나 비판의 대상이 되는 사실의 부분을 잘못 묘사 혹은 기록한다면 이는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언론중재제도가 오보를 정정케 함으로써 언론침해를 당한 피해자를 구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가급적 양측이 합의를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사의 불출석으로 불성립이 되고 마는 사건이 매년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중재제도의 정착을 위협하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중재의 기능을 하는데 그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불성립의 건수는 늘어나는데 비해 법원에 제소하는 건수도 적어 중재위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할 단계에 온 것 같다. 언론기본법 제 50 조 제 8 항은 「중재위원회는 언론상해의 내용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발행인 또는 방송국의 장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보도된 내용이 명백한 언론침해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거부하는 경우 그 시정을 언론사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이 중재위원회에 있다고 제 50 조 제 8 항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언론중재제도의 정착을 저해하는 또 하나의 요인은 중재위 밖 즉 「장외」에서 신청자와 언론사가 이루는 합의이다. 그래서 중재위에 신청한 정정보도청구를 신청인이 취하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정정보도문이 아닌 일반 기사의 형식으로 언론침해를 당한 신청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방법도 있고 또 피해자가 없는 오식이나 오보를 바로 잡을 때와 같이 「고침」의 형식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언론사가 신청인을 회유 혹은 협박하는 경우까지 있다.

이와 같이 장외처리의 건수가 최근 차츰 늘어나고 있는 것은 언론사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설립목적과 기능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보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이를 바로 잡아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극소화시켜 주는 것은 언론사의 당연한 의무이지 결코 수치스럽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신청인도 오보로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면 서슴지 않고 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 언론이 권익을 침해했는데도 언론사와 싸워 득 볼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중재신청을 기피한다면 아무리 좋은 중재제도도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 서울대학교 문리과 대학 영문과, 연세대학교 대학원(신문방송학 석사)
- 저술 : 「TV 인간론」, 「매스커뮤니케이션 사회화」, 「매스커뮤니케이션총론」 외 다수
- 현재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언론중재위원회 위원